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난호

제출년월일: '95. 4.

제 출 자: 대전광역시장

1. 제안이유

지방세법이 개정 (1994. 12. 22, 법률 제4794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선 보완한바 있으나 적용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천재 등으로 인한 지방세 감면시 감면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사 항을 지방의회의 의결로 감면하도록 함 (안 제4조)
- 나. 「납기한 연장」을 「기한의 연장」으로 개정하여 지방세의 모든 신고・납부・통지・제출등의 기한연장이 가능하도록 함 (안 제7조)
- 다. 지방세 감면신청은 지방세법 제292조 및 동법시행령 제2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정비함 (안 제17조등)
- 라. 지하수의 정의가 지방세법시행령 제216조에 규정되어 있어 이를 삭제함 (안 제77조)

3.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나. 관계법령 : 생략

다. 합 의: '95. 2. 13,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준칙 시달

대전광역시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제9조 및 제9조의2"를 "제9조"로 한다.

제6조중 "구청장(출장소장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납기한 연장"을 "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으로 하고, 동조 제1항중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기한"으로, "납기전"을 "기한이 만료되기 전"으로 하며, 동조 제2항중 "납기한"을 "기한"으로 하고, "납기한의 익일부터"를 "기한이 만료된 날의 익일부터"로, "그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를 "연장할수 있다"로 하며, 동조 제3항중 "납기한"을 "기한"으로 하고, "납기한의 연장"을 "연장된"으로, "납기한을"를 "다시"로 하는, 동조제5항중 "납기한"을 "신고납부기한"으로 하고, "가산금은"은 "가산세는"으로. "징수한다"를 "적용한다"로 한다.

제17조의 제목중 "비과세 및 감면"을 "비과세"로 하고, 동조 중 "법 제 107조 내지 제110조와 법 제261조 내지 제291조"를 "법 제107조 내지

제110조"로 하며, "비과세 또는 감면"을 "비과세"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4조의 제목중 "비과세 및 감면"을 "비과세"로 하고, 동조중 "법 제261조 내지 제291조"를 "법 제127조 내지 128조"로 하며, "비과세 또는 감면을"를 "비과세를"로 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제34조중 "제32조"를 "제31조"로 한다.

제55조의 제목중 "비과세 및 감면"을 "비과세"로 하고, 동조중 "법 제238조의2, 법 제279조, 법 제290조 제1항"을 "법 제238조의2"로 하며, "비과세 또는 감면"을 "비과세"로 한다.

제65조의 제목중 비과세 및 감면"을 비과세"로하고, 동조중 비과세 또는 감면"을 비과세"로 한다.

제74조의 제목중 비과세, 감면"을 비과세 또 하고, 동조중 "비과세 또는 감면"을 비과세"로 한다.

제77조를 삭제한다.

	(> 4 10 1		
		ㅂ	칙
		부	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ㅣ시해하다	
	1 - 1 - 0 - 1 - 1 - 1	1 710 27.	
1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과세면제등을 위한 방세법(이하 "법"이라	NE-	제4조 (과서	세면제등을	위한 조례) 저	- -
9조 및 제9조의2의 규정		9조			-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 또는 일부과세에 관한 :					-
따로 정한다.	,, _				
제6조 (부과징수사무의 위		제6조 (부고	사 징수사무	의 위임) ①	-
장은 시세부과징수에 관 를 따로 규정이 있는 것					-
하고는 당해 과세객체의	나 소재지				-
를 관할하는 구청장(출				구청장 ——	
포함한다. 이하같다)에 하여 처리한다. 다만,					-
세의 경우는 시장이 직					-
징수한다.					
제7조(납기한의 연장) ①		제7조 (천기	재등으로 역	, 긴한 기한의 연정	상
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지)			-
제26조의2 및 지방세법					-
(이하 '영'이라 한다)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				기하	-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 I M.	
는 지방세법시행규칙(여					
행규칙'이라 한다)제93	조의 규정				
에 의한 신청서를 납기	The second second		기한	이 만료되기 전-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현 *	행	개	정	안
현 ②구청장이 제1형 하여 납기한의 역 당하는 때에 및 특별정수의무기한의 역일부터기간을 정하여 그 납입기한을 연장 한의 연장을 받은 한 시유로 인하여 한의 연장을 필요를 증명할 수 있는 납기한의 연장에게 신청 구청장이 그 연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장의 규정에 의 면장이 필요하다 에는 납세의무자 자에 대하여 납 3개월이내의 그 납부 또는 할 수 있다. 에 의하여 납기 은 자가 불가피 여 또다시 납기 근자 할 때에는 은 자꾸 할 때에는 은 하는 사유를 서류를 갖추어 기한내에 관할 하여야 하며, 당이 필요하다고	②기한 만료된 날: 연장힐	의 익일부터	기한이
인정하는 때에는 3개월 이내의 기기한을 연장할 수 ④ (생략) ⑤납기한의 연장 경우의 당해 가신기간이 만료된 때제17조(비과세 및 신고사항) 법 제	간을 정하여 납 수 있다. 이 결정되었을 산금은 그 연장 내부터 <u>징수한다</u> 감면적용자의	다시 ④ (현행과 ⑤신고납부 	-기한 <u>가산세</u>	적용한다. 기 신고사항)

현	행	개	정	안
110조와 법 제261조	내지 제291			
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비과세		
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			
항을 증명할 수 있	는 서류를 갖			
추어 당해 과세대성	의 소재지를	~		
관할하는 구청장에	게 제출하여			
야 한다.				a
1~4. (생략)		1~4. (현행	과 같음)	
제21조(광산용 임목추	득의 면세신	〈삭제〉	*	
청) 법 제108조 제	7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산용에 시	ト용하기 위한			
임목을 취득한 자기	- 취득세를			
면제받고자 할 경우	-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	서에 광업권			
설정자 또는 광산경	형 명 자임을			•
증명하는 서류와 취	부득에 관한			
계약서 및 벌채허기	나등 관계서류	7		
를 첨부하여 관할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취득자의 주소·	거소・성명			
또는 명칭				
2. 취득물건의 소재	지		1920	
3. 취득년월일 · 벌ㅋ	배허가년월 및			
벌채기간		*		e
4. 수종·수령·주수	· 축적량(재			
적)		(a ²²⁾		a ,
5. 기타 참고사항		ži.	·	
	-			E STATE OF THE SECOND

현	행	개	정	안
제24조 (비과세 및	및 감면적용자의	제24조 (비과서		
	제261조 내지 제) .법	- 제127조 니	H지 제128조
291조의 규정이	네 의하여 등록세			
를 비과세 또는	- 감면을 받고자	비과세를		
하는 자는 다음	음 각호에 게기하			
는 사항을 증명	병할 수 있는 서류			
를 갖추어 당히	대 과세대상의			
소재지를 관할	하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in the
1~4. (생략)		1~4. (현행:	과 같음)	
제32조 (천재등으	로 인한 감면신청	(삭제)		
) 법 제9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		
농지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
시행규칙 제83	조제1항의 규정에			5405
의한 신고서식	에 의하여 그 농			
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100	
피해년월일,	피해사유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힌	· 신청서를 피해사			
	날부터 30일이내에			
구청장에게 저	출하여야 한다.			
제34조 (감면결정	[통지] 구청장은	제34조 (감면?	결정통지)	
제30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제31조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 결	절하고 그 결정내			
용을 시행규칙	세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	HT4.			

현 행	개 정 안
제55조(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제55조(비과세
신고사항) 법 제238조의2, 법) 법 제238조의2
제279조, 법 제2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를 비	
과세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	비과세
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	
어 과세기준일까지 관할구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 (생략)	1~5. (현행과 같음)
제65조(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제65조(비과세
신고사항) 법 제242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시설세를 비과세 또는	비과세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게지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	
준일까지 관할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5. (생략)	1~5. (현행과 같음)
제74조(비과세, 감면 적용자의 신	제74조 (비과세
고사항) 법 제255조제2항의 규)
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	
는 서류를 갖추어 발전소 소재	
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1~4. (생략)			1~4.	(현행고	라 같음)	,		
제77조 (정의)	이 관에서	서 사용하는	〈삭제	>	w			
용어의 정의								
1. "지하수"리	나 함은 치	 배수한 지하						
수를 음용	수로 판미	배하는 것과						
온천법에	의하여 ㅎ	기가를 받아						
채수한 온	천수를 목	구욕용수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	<u> </u>	F			s		
2. "음용수"리	나 함은 스	l 욧 o ㄹ						
판매하기								
채취하는								
말한다.								
,								
		* .	<u>.</u>					
				28	\$			
×								
								5 5
ě							•	3
		* u						
	20	a.	g.					
	,		,	2				
		2	a					
		, a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995년 4월 24일 내 무 위 원 회

I. 심 사 경 과

1. 제출일자 및 제안자 : 1995년 4월 13일 대전광역시장

2. 회 부 일 자 : 1995년 4월 15일

3. 상 정 일 자: 제4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1995. 4. 24)

상정, 심의, 원안가결

Ⅱ. 제안설명요지 (제안자: 재무국장)

1. 제 안 이 유

지방세법이 개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선·보완한바 있으나 적용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 요 골 자

가. 천재 등으로 인한 지방세 감면시 감면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사항을 지방의회의 의결로 감면토록 함. (안 제4조)

- 나. 「납기한 연장」을 「기한의 연장」으로 개정하여 지방세의 모든 신고, 납부, 통지, 제출등의 기한연장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7조)
- 다. 지방세 감면신청은 지방세법 제292조 및 동법시행령 제 231조의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정비함.(안 제17조등)
- 라. 지하수의 정의가 지방세법시행령 제216조에 규정되어 있어 이를 삭제함. (안 제77조)

Ⅲ. 전문위원 검토요지 (전문위원: 정진철)

본 안건은 지난 94년 12월 22일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일부 개선하였는바, 그 적용규정이 불명확하고 시행상 일부 미비점이 있어서, 이를 재보완하려는 내용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 첫째, 안 제4조에서 천재등으로 인한 지방세감면은 지방세법 제9조의2의 규정에서 지방의회의 의결로 감면토록 규정하고 있어서, 지방세법에서 별도 규정한 천재등의 감면내용을 본조에서 삭제하려는 것임.
- 둘째, 안 제1조에서는 밥기의 연장"을 "기한의 연장"으로 하여 지방세의 모든 신고, 납부, 통지, 제출등의 기한연장이 가능 토록 하였음.

셋째, 지방세의 감면신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 제292조 및 동법시 행령 제231조에 의거 신청토록 별도 규정하고 있어서, 본 안중 감면신청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넷째, 안 제77조의 지하수등의 용어정의는 지방세법 제216조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된 본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본 시세조례안은 지난 94년 12월 관련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서 금년 2월에 이에맞게 필요한 사항을 개선 보완한바 있는데, 그 이후에 시행상 일부 미비점과 불명확한 사항이 있어서 이를 재정비 보완한 것이라 하겠음.

따라서 금번 개정안은 관련법에 의한 범위내에서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복된 조례내용을 삭제정비하려는 내용으로서 본안과 같이 개정 시행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IV. 토론요지: 생 략

V.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